

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
(정점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98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31.

발 의 자 : 정점식 · 박충권 · 김태호  
성일종 · 신성범 · 고동진  
서천호 · 김성원 · 엄태영  
김정재 · 백종현 · 구자근  
강대식 · 김승수 · 김용태  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가뭄 방제를 위한 예보 및 경보, 가뭄 극복을 위한 시설 관리·유지 등 가뭄 대응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에는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생활용수 및 음용수 확보와 같은 실질적인 대응 체계에 대하여는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하고, 생활 용수 등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생활용수 또는 음용수 공급에 대한 대응을 구체화하고, 섬 지역 등 용수 확보에 취약한 지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가뭄 대책을 도모하고자 함(안 제33조제1항 등).



##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자연재해의”를 “가뭄으로 인한 생활용수 및 음용수 공급 차질의 예방·대응 등 자연재해의”로 한다.

제33조제1항 본문 중 “가뭄 재해가”를 “가뭄으로 인하여 생활용수 또는 음용수 공급에 중대한 차질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빗물모으기시설 설치”를 “생활용수 및 음용수 확보, 대체 수원 확보, 도서지역 상수도 확충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수자원관리자는 용수를 확보하기에 취약한 도서지역에 생활용수 및 음용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

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상습 가뭄재해지역에 대하여 빗물모으기시설 설치 등 가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중장기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(생략)  
<신설>

④ (생략)

----- . ----  
-----  
-----  
----- .

② -----  
-----생활용수  
및 음용수 확보, 대체 수원 확보, 도서지역 상수도 확충-----  
-----  
----- .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수자원관리자는 용수를 확보하기에 취약한 도서지역에 생활용수 및 음용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

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